

특약 변경 대비표

1. 약관명 : 『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계좌』 특약
2. 변경 시행일 : 2024년 7월 1일 (월)
3.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 내용 :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 개정에 따른 가입대상 확대 적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1조 (적용범위) ~ 제2조 (예금과목 및 상품의 종류) (생략)</p> <p>제3조 (가입대상) (생략)</p> <p>1~3. (생략)</p> <p>4. 「관세법」 제 84 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「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(ingot)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(再溶解)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과상의 주조물</p> <p>5.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 분의 40 이상인 물품</p> <p>6. 「관세법」 제 84 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「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,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</p> <p>제4조 (가입용도 및 목적) ~ 제16조 (계좌의 해지) (생략) (신설)</p>	<p>제1조 (적용범위) ~ 제2조 (예금과목 및 상품의 종류) (좌 등)</p> <p>제3조 (가입대상) (좌 등)</p> <p>1~3. (좌 등)</p> <p>4. 「관세법」 제 84 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「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(ingot)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(再溶解)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과상의 주조물</p> <p>5. 「관세법」 제 84 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「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,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</p> <p>제4조 (가입용도 및 목적) ~ 제16조 (계좌의 해지) (좌 등)</p> <p>부칙</p> <p>이 특약은 2024년 7월 1일부터 기 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</p>	<p>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 개정에 따른 가입대상 확대</p> <p>5를 삭제하고 6을 올림</p> <p>부칙 신설</p>